

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http://www.mke.go.kr
'11년 5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안종일 신산업표준과장, 한상미 연구관(509-7295) 조정아 나노융합팀장, 정대환 사무관(2110-4781)	

「나노제품 안전성」 국가표준으로 관리
 - “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” KS로 제정-
<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, 나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>

- 제품 생산 등에 참여하는 나노기술 이용자와 나노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보장, 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제고, 관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「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」을 국가표준(KS)으로 제정하였다.
- “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”의 일환으로 산업체와 함께 마련한 동 표준에는 나노제품의 개발에서 생산·가공·조립 또는 수입 판매대여처리하는 전주기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위해성,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
<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>

①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②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③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④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⑤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⑥ 공공의 건강·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⑦ 광범위한 사회적·환경적·윤리적 영향 ⑧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 등

- 정부와 나노관련업체,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나노제품 안전관리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의미로는

-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,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

<나노물질 관련 기술규제 사례>

(미국) 독성물질관리법 :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물질에 대한 독성자료 제출 의무화('08.10월)
 연방실충제 살균제 및 주약법 : 항균 나노 제품에 대해 안전성 데이터 요구사항 강화('10.8월)
 (호주) 국가산업화학물질평가법 : 나노물질 제조 수입시 신고의무화(2011.1)

-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건전한 나노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제조·시판되고 있는 나노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 시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 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참고로 나노기술 및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어, 각국에서는 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나노기술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있다.
- 유럽의 나노기술산업체협회에서는 소비자, 학회등과 함께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도 산업체가 NGO와 함께 나노물질위해성관리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국제표준화로 진행중에 있다.
- 향후에도 지경부에서는 교육, 홍보 사업으로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 지침이 사용자,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·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나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